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23대 국교련 제5차 회장단 회의

일시 2020년 10월 23일(금) 15:00 ~

장소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ions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교수회관 2층 국교련 사무국
전화: 064-754-2028 메일주소: newknupa@naver.com

제23대 국교련 제5차 회장단 회의

□ 개 요

○ 일　　시 : 2020년 10월 23일(금) 15:00 ~ 24일(토) 13:00
○ 장　　소 :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
○ 참석대상 : 국교련 회장단 회(의)장 및 임원, 국교련 고문, 자문위원 및 정책위원

□ 회의 일정

- 1일차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5:00	□ **등록**	
15:00~15:10	□ **국민의례**	김경호 사무총장
	□ **성원보고**	
	□ **상임회장 인사말**	오홍식 상임회장
15:10~17:40	□ **제23대 국교련 제4차 회장단회의 회의록 보고** □ **활동보고** □ **보고사항** 1. 국교조 경과보고 □ **논의사항** 1. 학칙에 근거한 교수보직경비 지급 대상 검토 - 이한수(강원대 교수회장) 2. 대학 교원에 대한 '강등' 징계의 배제 - 송기춘(전북대, 국교련 정책위원장) □ **기타사항** 1. 교수신문 논설위원 추천 및 기고 필진 참여 요청	회장단
17:40~17:50	□ **폐회** (기념사진 촬영)	
17:50~20:00	□ **이동 및 만찬**	장소: 쟈스민

- 2일차

시 간	내 용	비 고
~09:00	□ **호텔 조식**	호텔
09:30~11:50	□ **공지천-의암호-소양강댐 탐방**	학교 버스
11:50~14:00	□ **오찬 및 다과**	큰지붕닭갈비
14:00~	□ **해산**	

[목 차]

순번	내 용	페이지
Ⅰ	**[제23대 국교련 제4차 회장단회의 회의록 보고]**	1
Ⅱ	**[활동보고]**	11
Ⅲ	**[보고사항]**	
	1. 국교조 경과보고	25
Ⅳ	**[논의사항]**	
	1. 학칙에 근거한 교수보직경비 지급 대상 검토 - 이한수(강원대 교수회장)	27
	2. 교육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관련사항 - 송기춘(전북대, 국교련 정책위원장)	37
Ⅴ	**[기타사항]**	
	1. 교수신문 논설위원 추천 및 기고 필진 참여 요청	47
Ⅵ	별첨 1. 국교련 회칙	51
	별첨 2. 회원교 연락처	55
	별첨 3. 오시는 길	62

색 지

색 지

Ⅰ. 제23대 국교련 제4차 회장단회의 회의록 보고

제23대 국교련 제4차 회장단회의 결과

○ 일　시 : 2020년 9월 18일(금) 15시
○ 장　소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1층 하누리강당
○ 참석자 : 전체교 26/41개교

연번	학교	직위	참석자
1	국교련	상임회장	오홍식
2		사무총장	김경호
3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교수회장	박철원
4	강원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한수
5	경북대학교 교수회	부의장	오세욱
6	경상대학교 교수회	회장	백승철
7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한명숙
8	공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서정호
9		사무국장	이명수
10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유경숙
11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상호
12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이헌종
13	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노창균
14	부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두진
15	부산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한성
16		연구원	김태형
1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신윤호
18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조철원
19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성호
20	순천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홍균
21		부의장	오시영
22	안동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응임
23	전북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소은선
24	제주대학교 교수회	정책처장	제갈윤석
25	창원대학교 교수회	의장	류병관
26	충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종성
27	충북대학교 교수회	정책위원	김대중
28	한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오호택
29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박종률

30		사무총장	김현욱
31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평의회	사무총징	장익영
32		사무부총장	김지연
33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상구
34	한밭대학교 교수회	회장	임경빈
35		부회장	이봉호
36		사무처장	백강
37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박병욱
		정책위원	신옥주
		정책위원	이기홍
		정책위원	임재홍
		정책위원	권오현
		정책위원	김명연
		정책위원	김대중
		정책위원	남중웅

Ⅰ. 제23대 국교련 제4차 회장단회의 회의록 보고

- 성원보고 : 전체 41교 중에서 26개교가 출석하였음
- 상임회장 인사말

Ⅱ. 활동보고

-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교련 의견서 제출, [정책위원회 워크숍] 참석 요청, 성과연봉 c등급자에 대한 교육연구급 가산 제한에 대한 국교련 의견서 제출, 국교조 단체교섭 안건 제안요청, 국교조 알리미 자료 홍보 및 회원교 지부 설립 협조 요청, 국립대학 교원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지연에 따른 국교련 의견서 제출 등이 이루어짐

∴ 성과급연봉 c등급에 관한 내용은 19p 참조

Ⅲ. 보고 및 논의사항

보고사항 1. 국교조 경과보고

- 2020년 8월 11일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공포화되었음, 12일 국교조
- 노동자 설립신고서 제출 이후 13일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음
- 내달 10월 25일은 1주년되는 날이므로 강원대에서 진행예정인 국교련 회의 시 1주년 행사가 약소하게 이루어질 예정임
- 10월 중순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 국교조 조합비를 지출하면 지정기부금 처리가 되기에 연말정산 시 정산하도록 하겠음
- 국교조 홍보자료는 8개의 항목으로 공표 되었기에 각 대학의 교수 회장·의장님들께서는

해당학교의 교수님들께 알림을 부탁드림

- 단체교섭준비 '가안'이 각 대학이 이미 배포되었음. 단체교섭과 관련된 각 대학의 의견이 제출되면 참고하여 단체교섭 '안'으로 채택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국교조의 추진방향 : 현재 교원노조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 대학교원 정치활동 개정, 단체교섭의 핵심인 쟁의를 못하는 것도 개선 따라서 국회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교섭대상이 교육부장관으로 한정되어있는 것을 인사혁신처장, 기재부장관 등으로 확장토록 하겠음
- 경사노회에 각 부서에 책임자로 구성된 사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의견 수렴 후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임
- 3명 이상 인원이 구성되면 지회를 설립할 수 있고 단체교섭 시 많은 사람이 조합원에 분포되어있으면 보편적 구성 대우를 받고 협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의 회장·의장님들께서는 지회설립에 관하여 협조요청을 부탁드림
-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음

▷ 질문 : 국교조의 일반학생들에게 홍보하는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국교련에서 각각의 대학에 홍보자료를 배포하였음 따라서 각 대학에서 어렵더라도 배포 부탁드림

∴ 일전에 국교조에서 각 대학의 교수회로 교수노조 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첨부문서로 보냈음 예를 들어 제주대학교는 세 번의 과정을 걸쳐 적극적인 가입을 권유하였으며 가입의사를 받고 교수회에서 접수를 받은 이후 위원장과 지회설립을 추진할 계획

논의사항 1. 지방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실현화 방안

- 57p 참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⑴지역에서 우수한 인력배출, ⑵지역에 우수한 기업 유치가 이루어져야 함
- 양극화 불균형의 가속화는 학력인구 감소, 4차산업혁명 등이 있음
- 정부는 여전히 지방대학을 홀대하고 있으며, 국립대와 사립대를 비교하였을 때도 국가지원 차원에서 사립대의 예산이 월등히 높음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을 살릴 의사가 전혀 없음
-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짐
- 교육지도 시 우등생 선별 후 하급생과 우등생을 구별하여 우등생을 중심으로 교육함에 따라 학력의 빈부격차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중소기업 90%는 스스로 역량 강화를 시도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외면하고 있음
- 무상교육이 거론되면서 교육혁신, 교육혁명이 대두되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교원 수 증대, 교육혁명을 이루기 위한 시간 소요)
- 학력 인구의 감소로 인해 수도권으로 우수 학생이 밀집하여 지방대학은 점차 등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무상교육 및 장학혜택이 풍부한 학교로 지원을 하고 있기에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무상교육이 시발점이 될 수 있음

▷ 질문 :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은 얼마인가?

∴ 장학내역을 종합한 결과 5800억의 예산을 추산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을 포함한다면

40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현재 BK장학으로 5300억이 예산으로 산정되었음. BK사업단 예산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므로 수도권의 위치한 대학교와 지방대학교 간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무상교육 추진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여짐

› 질문 : 시행이 어렵더라도 국교련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질문 : 무상교육만이 최고의 방안인가에 대한 의문제기. 등록금과 더불어 시설 노후화 개선(기숙사, 편의시설). 학생들의 경향성을 파악하여 예산을 투입할 것을 권함. 그 외 우수한 학생들을 지방학교에 유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 등록금지원과 더불어 후생지원 등을 마련토록 하는 등의 방안 등을 모색

∴ 향후 국교련에서는 무상교육에 대해서 의논을 할 예정이며, 성명서 혹은 제안서를 마련 하여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삼아 정책위원장을 통해 '안'을 마련한 후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음

논의사항 2. 국공립대학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 73p 참조 : 2019년 3월 4일 38개 국공립대학교 중 직선제를 통하여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대학은 16개이며 간선제로 선정하는 학교는 22개교임
- 어떠한 방식이 최상의 제도라고 보는 것은 어려움
- 양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원과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74p 상단 참조 : 총장직선제와 관련하여 각 대학구성원들의 참여문제, 표의 가치의 평가문제,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 대학 구성원들의 갈등문제, 직선제 후보의 선거 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과도한 규제가 선거운동방식과 더불어 나타나는 문제, 너무 과열된 선거운동, 현재 법에서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음서적인 선거운동이 발생하는 등의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의기구의 투명성, 대표성 결과에 대한 실리성 등 간접선거를 채택한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총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선정제도는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을 함 기본이 되는 교육공무원법은 2020년 7월 30일까지 총 72차례가 개정이 되었음. 이처럼 법률이 개정되었음은 문제 제기에 따른 법령 제정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음
- 민주화와 더불어서 총장임명 후보자를 직선으로 선출하는 시기가 있었음
- 76p 참조 : 이전에는 법령의 근거 규정 없이 직선으로 총장을 선출 한 후 교육부가 지침을 내리고 법률을 개정하였음.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아래 총장임명 추천위원회를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77p 참조 : 부교수, 대학교원들로 총장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는데 이것이 간선제 방식을 강제하는 시기에 이르러서 총장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변화하게 됨
- 법률의 규정 변화 없이 고등교육법 제 24조 대학합의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추천회에서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 교원의 합의된 방식으로 어떻게 후보자를 선정 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본적인 규정에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정부에서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 선진화 방안 수립, 2012년 이후 총장 선거와 관련된 방법을 재정적 지원과 연동하여 직접적인 방법으로 총자후보자 선정을 한 학교에서는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 78p 참조 : 재정지원을 통해서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없이도 간선제 강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간선제에 대한 항의를 제기한 부산대학교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12) 대학의 합의된 방식에 따라 대학교원과 직원들이 총장임용후보자에 선정방식에 대해서 각각 투표를 하였음. 교원들은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법, 직원들은 직선제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동의함. 그러나 학칙 배정권은 총장에게 있기에 간선제를 채택하고 총장 후보자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선정한다는 학칙개정에 있어서 많은 비판이 뒤따랐으며 교수, 교원, 직원 등의 표의 가치가 1:1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가에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족을 호소함
- 총장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선출하는데 투명성이 불투명하여 현재까지도 갈등이 이루어짐. 이 규정은 2016년에 재개정되어 현재 시행령에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음. 2017년 정부의 민주화와 더불어 대학의 자율성이 회복되고 있으며 이전 문제가 제기되었던 총장후보자 선정 이후 임명을 취소하거나 2배수로 선정하였는데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를 임명하는 등의 재정지원을 통한 간접적으로 선거방식을 국가가 관여하는 행위는 사라졌지만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에 관하여 법의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고찰하였음
- 따라서 총장임용후보자와 관련하여 어떤 기구에 얼마나, 누군가 참여하는지?, 대학구성원들의 표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것인가? 에 대한 대학의 자율과 관련한 헌법 제 31조 4항에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80p를 참고하여 헌법적인 것을 다루어보았음
- 제 22조 1항은 학문의 자유가 대학의 자율을 보장한다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제 31조 4항은 확인적 규정이라고 이해를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개인의 사견으로는 대학의 자율을 보장하는 헌법령이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는 22조 1항을 근거로 삼을 이유가 없고 31조 4항이 87년 헌법개정을 통해서 명시됨에 따라 의미가 있는 조항으로서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이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대학자율의 근거조항은 대학자율을 보장하는 제 31조 4항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대학자율성의 주체가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학문의 기반이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의 핵심적인 주체의 교원과 학문의 자유와 학생까지도 대학교육의 주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인적 범위 내에서 해당됨
- 하지만 개인의 의견으로는 대학구성원은 대학자율의 주체가 되어야하며 대학구성원에는 교원, 학생, 직원도 포함된다는 관점에서 대학의 주체는 교원, 학생, 직원이라고 사료됨
- 83p 참조 : 따라서 대학구성원들이 대학자율에 대한 기본권의 주체이나 자율성을 위한 어떠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차등적일 수 밖에 없음을 헌법재판소도 명시하고 있는 부분임
- 84p 참조 : 현재 총장후보자임명 규정상 여러사람들이 직선제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음
- 개인의 사견으로는 선정방식을 대학 자체에 맡기는 것이 부합한다고 사료되고 학교에서 이 문제를 교원이 합의된 방식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여겨짐. 자율적으로 선정한 것을 직선제로만 해야하는 것이 오히려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됨 따라서 총장후보자 선정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대학구성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를 넓힐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현재 24조 3항에서

는 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교원 대신에 대학구성원의 합의방식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문제가 제기 되었음

- 차등적 합의는 총장선거 이후에 항시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임 이 문제에 대한 현실을 보지 않고 그 구성원까지도 법률만 개정해서 주체를 인정하고 넓히는 것은 무리가 있음 또한 추천위원회에 구성에 있어 현재의 대학공무원 임용령에서는 교원과 직원, 학생 뿐만아니라 졸업생과 대학발전에 기여한자가 포함이 되어야하는데 대학의 자율적인 장을 선정하는데 왜 외부의 사람들이 포함되어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대학추천위원회에서 총장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서 하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학외부인사들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됨
- 선관위의 선거위탁규정을 살펴보면 직선제로 총장 임용후보자를 선정한 이후 강제적으로 선관위의 선거위탁을 하도록 되어있음 헌법재판소는 합법이라고 판단하나 선거라는 것이 대학 자체에서 대학의 '장'을 선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제도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선거의 위탁문제도 법에서 정할것이 아니라 대학자체 합의, 대학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독일은 각 주가 교육에 대한 권한 및 대학교육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음 연방차원에서는 연방대학교 범주법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이 법에서는 대학교와 관련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음
- 90p 참조 : 대학이 어떠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 대학자치가 보장되어햐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대학자치를 위해서 구성된 단체에 각 대학 구성원 단체들이 어떠한 비율로 참여하는가에 대한 규정을 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부분들이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대학에 참여를 하는 것이 대학구성원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대학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수, 학문적 연구원, 학생, 기타직원으로 이루어졌음. 우리나라가 조교를 포함하는것과는 다른체계임. 학문적 연구원이라함은 박사과정 중 학생 지도를 하거나 강의를 담당하는 등의 사람들이 학문적 연구원에 포함되며 마부륵 대학교는 대학교수도 학문적연구원으로 포함되어 있음. 그 단체의 비율은 강학과 관련된 차원에서는 최소한 절반 이상의 표가 대학교원이 되어야함. 그 다음 예술, 연구, 발전계회, 교수초빙 등 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수가 과반수의 표이며, 사실 절반 이상의 '표'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 것임
- 독일의 대학판결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본 내용이 모든 자치기구에서 동등참여원칙을 기준으로 하면서 각 구성원들에게 1:1의 참여 비율과 표를 등가로 평가하는 것이 학문의 자유에 반한다고 하는 내용임. 이후 독일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기구에대한 동등참여도 보장하나 차등적 평가를 구성에 있어서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확고해졌음. 마부륵 대학의 선거령을 살펴본 이유는 독일은 대부분 간선으로 선출이 되어있고 간선으로 선출을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인 세넛이라는 조직임
- 세넛은 교수평의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며 간접선거를 통해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있어 총장 지원제, 후보자라고 선정이 된 사람들이 적법하지 않다면 새롭게 선출할 수 있으며, 총장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음

- 세넛의 권한은 최종안 작성, 동의권, 의결권, 의결표명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므로 총장 임용 시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구성원들은 교수 9명 학생 3명, 학문적 구성원 3명, 행정기술 구성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원그룹과 학문자연구원 그룹까지 합치면 총 18명중 12명의 교원들과 학문적 연구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음
- 독일의 선출 방식 절차를 본 결과, 총장 후보자 선정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직선제로 곡 규정할 필요가 없음. 즉 대학교원의 합의된 방식 또는 구성원의 합의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차등적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함
- 96p 참조 : 총장임용후보자의 규정에 대학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대학에서 어떠한 한 제도가 반드시 모범이 될 수도 없다는 것과 더불어 독일 각 대학의 선정 규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평의원회 구성과 조직 권한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길 바라며 대학총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로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짐

논의사항 3. 현행 국공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국립대에서 투표 비율을 협의하면서 지금까지 직원들의 비율이 높아짐 대학구성원에 직원들도 포함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연구와 교육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직원들이 총장선거방식 절차를 다 참여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부경대학교의 경우 올라온 안건 중 학생들을 기획위원회, 교과과정 개편위원회 위원 등으로 편속할 것을 직원들이 요청하였으며 이에 부결하였음. 일련의 과정을 통해 느낀 바, 학생들이 교원들에게는 적대적인 반면 직원들에게는 호의적이였으며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학생들을 포섭하여 대리의사를 표현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김

▷ 질문 : 총장 선출 문제는 결론을 짓기 어려움. 24조 3항에 따르면 '추천위원회 또는'으로 명시되어 A또는 B라는 선택에 따른 문제제기가 발생이 됨에 따라 이와같이 병렬적 문항의 불필요성을 제기함

논의사항 4. 국립대학법 재정의 쟁점

- 국립대학법을 제정하고자 한 이유는 헌법적인 가치가 국공립대학에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기본취지가 있음
- 헌법 제 31조 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지만 현실은 다름. 또한 국가와 국립대학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려 하였으나 우리나라 대학은 오랜기간 국가 운영 혹은 경제발전의 수단정도로 인식되어 관료주의적 통제하에 있었음
- 1995년 이후로 시장주의적 경쟁 메커니즘을 대학에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대학의 자율성이 기업가적인 자율로 변모하면서 고등교육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함
-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코자 '대학의 자율이라는 것은 지식의 생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고등교육 대학의 이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와 대학의 대등한 관계를 성립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국립대학법에 편입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임
- 고등교육법은 국가가 대학이나 고등교육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률

이기에 국가가 대학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많지만 대학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대학의 자율성이 반영될 수 있게끔 국립대학법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음

- 110p 참조 : 국가와 대학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관한 원리들을 발견하기 어려움 당시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에서 법령 또는 국제 규범들을 검토한 결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부분으로는 첫째 고등교육법도 기회를 균등히 해야함 둘째 점진적인 무상교육의 원리로 보여졌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차별금지협약에 들어있는 내용임
- 이처럼 세계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지만 대학까지 내용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임 대학의 법은 유럽권역, 북미권역, 그 외 나머지 권역 세 가지 갈래로 나뉘며 이러한 국제규범이 실현되는 지역은 유럽과 북미권역이라 볼 수 있음
- 유럽은 2만 달러의 소득수준이 넘게 되는 수준에서 무상교육을 실현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3만 달러를 넘어섰음에도 실현을 하지 못하고있음.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국가와 대학의 문제를 보는 것은 어려우나 국가와 사회의 원리적 측면에서는 대학자치를 보장하는 유럽국가들처럼 이루어져야 함
- 프랑스 고등교육 무상의 원리는 공화국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발생이 되어야하고 이는 국민들이 박식해야만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원리가 바탕이 됨.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공적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고등교육 무상이라고 보았음
- 사회를 대표해서 국가가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추진한다면 그 대가로 사회도 국가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진출토록 해야함 따라서 이러한 측면들을 참고하여 만든 국교련의 국립대학법안이 제 1조임
- 국립대학의 법적인 지위를 살펴보면 학문의 자유를 위해 인정받는 대학의 기관자치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임. 대학자치기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자는 규정인 국교련의 국립대학법안은 대학자치조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대학평의회를 구성하였지만 2017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평의원회가 제도가 도입됨에따라 이 제도는 대학운영 원리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적절하며 현재 소송이 제기 된 상태임
- 국립대학법안을 살펴보면 총장선출방안에 대해서 국립대학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조승래 의원의 초안 제 7, 8조를 보면 추천위원회의 구성방식에 대해 대학평의원에와 유사한 규정을 두었기에 유감을 표함
- 116p 참조 : 국가가 대학재정에 관한 규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가가 대학의 재정을 어느정도 책임질 것 인지를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 41조 2항에 기입 하였음
- 국립대학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교원의 비율이 규정안에서는 낙후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부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전임교원확보 비율만큼은 규율을 명확히 해야함
-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 디지털시대 대학혁신방안으로 재원을 어떻게 절감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낙후된 고등교육이 국립대학에서부터 시행되도록 하게끔 보여지는 것 같아 우려스러움
- 120p 참조 : 대학의 서열화에 관해 국립대학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중점임

- 국립 대학법을 입법청원 과정에서 직원과 학생이 연대해서 발의를 하려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음.
- 조승래 의원안은 국교련, 교육부, 지원학생들의 입장을 종합하여 만들었으나 이는 국가와 대학의 관계가 에매한 타협주의적 성격으로 나타났으며 국립대학의 학력구성원들 즉 교수, 학생, 직원과의 관계의 복잡성을 초래함
- 이전에는 국가가 재정적인 부분에 관해 무책임하게 용인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므로 전면적인 내용들에 대해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교련이 언급한 부분들을 관철할 필요가 있음

논의사항 5. 현행 고등교육법의 문제점과 국립대학법 진행 경과 토론문

- 법류체계와 관련하여 법안은 국립대학법을 고등교육법의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립대학법의 제정과 함께 사립대학법의 제정도 논의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이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분리성을 야기함
-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 간 기능과 역할의 분담을 포함한 대학체제개편까지 염두에 둔다면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그 대학의 성격에 맞게 각각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짐
- 대학자치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임 그러나 법안의 규정의 의할 경우 학칙은 결국 자치규범이 아니라 위임규범과 법령집행규범만이 인정되고 대학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됨
-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이 함께 연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요구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며 공영사립대학 등 권역별 통합네크워크를 구축하길 바람

논의사항 6. 신설 고등교육법 제 19조의 2의 위헌성에 대한 분석과 대학평의원회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방안

-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파악하여 독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적인 부분들과 현실적인 부분 중 합치되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 헌법적인 관점으로 볼 때 대학의 자치와 관련하여 '책임주체는 교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1978년 대학판결에도 나와있듯이 이러한 부분들이(135p, 136p 참조) 헌법이 정하는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라는 목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직능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적용되는 영역이라는점을 전제하고 논의를 해야함
- 143p 참조 : 대학평의원회는 헌법이 부여하는 학문, 연구 및 교수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대학의 자치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와의 관련성이 큰 역할을 하는 국공립대학 내부의 구성분자, 즉 교수를 중심으로 그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합담항
- 실제로 대학의 대학평의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운영위원회에도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는 그 구성위원이지만 일반직 공무원 등 핵정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하였지만 헌법재판소의 다수의 의견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대표의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기각하였고, 나아가 소수 의견에서는 직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관계없는 제도적 자유의 영역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 147p 참조 : 대학의 자치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수차례 명시적으로 언급한바가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 19조 2항에 추가적으로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직급을 6급 내지 7급 이하로 한정하고 교육부에서 파견되는 대학 내 고위직 공무원이나 그의 직접적 인사, 사무감독을 받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추가 입법할 필요가 있음

논의사항 7.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예정 '국립대학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205p 참조 : 조승래 의원의 법안 내용은 국립대학 자율성 확보와 제고,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확보 등의 내용, 교육부의 대응문제 등의 내용들이 정립되지 않았음
- 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음

<회의사진>

Ⅱ. 활동보고

1. 공문발송_교육부 의견서 제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교육부장관

(경 유) 고등교육정책실

제 목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교련 의견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에서는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첨부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견서 1부.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전문위원 함주현 사무총장 김경호 상임회장 오홍식
시행 국교련23-024 (2020.10.06.) 접수 (2020. . .)
주소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교수회관 2층
전화 064-754-2028 E-mail: hampd@jejunu.ac.kr/ 공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유기홍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의견서

I. 법률안(2020. 9. 10. 발의, 의안번호 3719)의 제안이유와 개요

1. 제안이유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그동안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그 사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 진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의 필요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

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5년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적 정책을 추진으로 정책결정이 교육현장과 괴리되고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국민 여론이 60%에 이르고 있고(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1.),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정책 결정 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법률안의 개요

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2조).

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 협의체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시 학생·청년, 학부모 대표자(대변자)가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3조).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안 제4조).

마.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5조).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안 제7조 및 제9조).

사. 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안 제10조).

아.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1조).

자.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차. 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음(안 제14조)

타.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둠(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파.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소관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II. 교육개혁 방안으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의 전제조건 충족 여부

1. 교육정책의 문제

- 장기적 구상의 부재와 실천의지 부족
- 교육정책의 정치적 결정
- 교육정책 책임자의 독단과 수시교체
- 교육정책담당자의 무능과 부패
- 학교 현장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2. 문제해결의 방향

-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사회적 합의에 기초
-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
- 실패한 교육정책 담당자와 부패관료의 교체와 조직 쇄신: 교육부 폐지와 조직 재구성
- 합리적인 교육정책 수립, 수정과 시행

III. 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점

1. 법률안의 의의

-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안정적·지속적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화
- 독립성을 가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정책 수립 기구 구성

2. 법률안의 전체적인 문제점

-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
- 교육부와 권한 중복과 충돌 문제
-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의 안정성의 문제
- 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력 확보수단 결여
- 고등교육에 소홀할 가능성 있음

3.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

- 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의 수립에 관한 권한이 있어도 현실적 교육정책이 이와 충돌할 경우 이를 제어하거나 현실적 교육정책을 위원회의 정책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단순한 자문 기능만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머무를 수도 있음.
- 이렇게 될 경우, 굳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번거롭게 할 이유가 없으며, 점차 '조직을 위한 조직' 또는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됨.

4. 교육부와 권한 중복 및 충돌의 문제

- 법률안 제10조의 위원회 권한은 교육부에서도 수행하는 업무이며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중복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권한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음. 그동안 교육부의 기능축소 또는 이관을 전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논의되지 않아 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져 왔는데, 이제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음.

-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에 관하여 교육부의 집행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교육기본정책이나 중장기교육정책에서 위원회가 교육부를 지도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님.
- 위원회가 심의·의결의 권한을 가지고 관계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제13조 제3항)고 해도 교육부장관과 달리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고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교육부 정책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경우 위원회는 교육의 기본정책의 시행이나 중장기 교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임.
- 위원회의 결정을 교육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 교육부의 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확보되지 않음.
- 전문위원의 위촉이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다른 부처에서의 파견에 관하여, 이를 금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예견되고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자주적인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에 적지 않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5. 위원회의 안정성의 문제

-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대부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의 추진력을 담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평가되어야 할 것은 아님. 그러나 위원회에서 수립한 정책을 새로운 대통령이 뒤집을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으며 이를 법적으로는 막기 어려움.
-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나 현 시점은 대통령의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아 연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회의 경우에도 정당이나 정파간의 타협의 결과 위원이 임명되게 될 것이 예상되어 연임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높지 않음. 따라서 위원의 구성이 국회나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결과에 의존하게 되어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수립이라는 목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됨. 정치적 변동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최소 5년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위원 21명 이내 가운데 8명(상임위원 2명 포함)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위원장을 대통령이 상임위원 가운데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것은, 상임위원 가운데서 호선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안으로 생각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감 1인이 시도교육감협의체 대표의 자격으로 위원으로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위원 1인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사무에 관하여 대표이므로 교육감협의체의 대표가 위원이 되는 것과 중복적인 면을 가지게 됨. 위원회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위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체의 대표가 2년 이내의 임기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협의체에서 위원 2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됨.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는 시·도지사협의체나 시장·구청장협의체에 위원 추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정작 교육과 관계되는 시·도교육감협의체에는 추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추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학생 또는 청년과 학부모를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1명씩 포함(안 제3조 제5항)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이 대학생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하며,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해서도 정의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단체는, 아직 이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정하기 어려우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이와 관련된 법안을 보면 한국교총이나 전교조 수준의 규모를 가진 단체만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주로 초중등 교원이 그 구성원이 되

므로 대학교원이 구성원이 되는 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따라서 대학교원의 대표성을 가지는 단체(예를 들어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나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도 위원후보 추천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 결격사유(안 제7조 제1항 제2호)가 되는데, 이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의문임. 특히, 오래 전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나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정당이 관여하지 못하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자도 결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함. 더구나 후보자가 되었다가 당선까지 된 시도교육감협의체의 대표가 위원이 되는 것과 비교해도 균형이 맞지 않는 방안임.
- 교육부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이 이원회의 결정 사항이 교육부를 구속하게 되므로 기관 구성의 원리상 교육부의 장인 장관이 그 구성원이 되도록 해야 교육부와의 권한행사에서의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봄.

6. 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력 확보수단 결여

- 현재 진행중인 교육정책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거나 문제점을 적시하고 시정을 구하는 일조차도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문제 시정을 위한 견제적 기능의 수행 없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의의를 갖지 못할 수 있음. 중장기 계획의 실천 가능성은 현안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지 관철 여부에 의하여 판명될 수 있음.
- 위원회에 의한 교육정책의 결정과 교육부의 집행이라는 구상이 실현되기 어려우며, 위원회의 권한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큼.

7. 고등교육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을 담당하게 되므로 주로 유·초·중등 교육에 초점이 맞춰지게 됨.
- 그 결과 교육의 비중이 초·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등교육(대학)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고, 특히 대학의 연구에 관한 정책의 적절한 수립과 시행은 교육에도 긴밀하게 관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2. 공문발송_교육부 의견서 제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교육부장관

(경 유) 고등교육정책실

제 목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교련 의견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에서는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첨부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견서 1부.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전문위원 함주현 사무총장 김경호 상임회장 오흥식

시행 국교련23-025 (2020.10.06.) 접수 (2020. . .)

주소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교수회관 2층

전화 064-754-2028 E-mail: hampd@jejunu.ac.kr/ 공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교련의견서

I. 법률안(2020. 9. 16. 발의, 의안번호 3944)의 제안이유와 개요

1. 제안이유

교육은 백년 후까지를 내다봐야 하는 동시에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영역임.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제도 역시 수시로 급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커지고 있고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이러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정권과 정파를 초월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2. 법률안의 개요

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원회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률상 독립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둠(안 제2조).

다. 위원회의 위원은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기타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하되, 각 조건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며, 대통령과 국회 추천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위원을 각 1명 이상씩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또한,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섭단체 추천 6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교육부차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1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3조).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안 제4조).

마.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성과 중장기 교육 방향 수립을 위한 기구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원리가 특별히 중요함. 이에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독립성과 위원회 업무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제외하고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에 한해 위원의 임기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은 2년, 전체 위원의 3분의 1은 4년, 나머지 위원은 6년으로 추첨에 의해 정함(안 제5조).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안 제7조 및 제8조).

사.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 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학생·학부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국민참여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아. 위원회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인재개발정책,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에 관한 사항,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안 제12조).

자.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

차.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대통령,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안 제15조).

타.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음(안 제16조).

파.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안 제18조 및 제19조).

하.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20조).

II. 교육개혁 방안으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의 전제조건 충족 여부

1. 교육정책의 문제

- 장기적 구상의 부재와 실천 의지 부족
- 교육정책의 정치적 결정
- 교육정책 책임자의 독단과 수시교체
- 교육정책담당자의 무능과 부패
- 학교 현장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2. 문제해결의 방향

-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사회적 합의에 기초
-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
- 실패한 교육정책 담당자와 부패관료의 교체와 조직 쇄신: 교육부 폐지와 조직 재구성
- 합리적인 교육정책 수립, 수정과 시행

III. 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점

1. 법률안의 의의

-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안정적·지속적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화
- 독립성을 가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정책 수립 기구 구성

2. 전체적인 문제점

-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
- 교육부와 권한 중복과 충돌 문제
-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의 안정성의 문제
- 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력 확보수단 결여
- 고등교육에 소홀할 가능성

3.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

- 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의 수립에 관한 권한이 있어도 현실적 교육정책이 이와 충돌할 경우 이를 제어하거나 현실적 교육정책을 위원회의 정책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임. 제13조 제3항에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력이 있는 권한의 행사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따라서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 기능만을 수행하는 데 머무를 수도 있음.
- 이렇게 될 경우, 굳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번거롭게 할 이유가 적을 것으로 생각됨. 점차 ‘조직을 위한 조직’ 또는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고 판단됨.

4. 교육부와 권한 중복 및 충돌의 문제

- 법률안 제12조의 위원회 권한은 교육부에서도 수행하는 업무이며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중복하

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권한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음. 그 동안 교육부의 기능축소 또는 이관을 전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논의되지 않아 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져 왔는데, 이제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음.

-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에 관하여 교육부의 집행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교육기본정책이나 중장기교육정책에서 위원회가 교육부를 지도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님.
-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속한다(안 제13조 제6항)고 해도 교육부장관과 달리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고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교육부 정책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경우 위원회는 교육의 기본정책의 시행이나 중장기 교육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임.
- 위원회의 결정을 교육부가 따르지 않을 때는 교육부의 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확보되지 않음.
- 전문위원의 위촉이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다른 부처에서의 파견에 관하여, 이를 금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예견되고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자주적인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에 적지 않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5. 기구의 안정성의 문제

-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대부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의 추진력을 담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평가되어야 할 것은 아님. 그러나 위원회에서 수립한 정책을 새로운 대통령이 뒤집을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으며 이를 법적으로는 막기 어려움.
-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좋은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위원장을 상임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3인 가운데 호선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형식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라리 위원장 역할을 할 사람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단체는, 아직 이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정하기 어려우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이와 관련된 법안을 보면 한국교총이나 전교조 수준의 규모를 가진 단체만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주로 초중등 교원이 그 구성원이 되므로 대학교원이 구성원이 되는 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따라서 대학교원의 대표성을 가지는 단체(예를 들어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나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도 위원후보 추천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학생과 학부모위원을 1명씩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우 그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학생이나 학부모 위원의 경우 임기를 2년이나 3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교육부차관이나 시도교육감협의체의 대표도 임기가 2년 미만임.
- 교육부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이 이원회의 결정 사항이 교육부를 구속하게 되므로 기관구성의 원리상 교육부의 장인 장관이 그 구성원이 되도록 해야 교육부와의 권한행사에서의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임.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 결격사유(안 제7조 제2항)가 되는데, 이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지 의문임. 특히, 오래전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나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정당이 관여하지 못하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자도 결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함. 더구나 후보자가 되었다가 당선까지 된 시도교육감협의체의 대표가 위원이 되는 것과 비교해도 균형이 맞지 않는 방안임.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감 1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 1인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사무에 관하여 대표이므로 교육감협의체의 대표가 위원이 되는 것과 중복적인 면을 가지게 됨. 위원회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위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체에서 위원 2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할 경우, 수많은 자치단체 가운데 몇 거대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자 가운데서 임명될 것이 분명하므로 굳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기 보다는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협의체(시·도지사협의체 또는 시장·구청장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인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임.
- 위원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안 제8조 제1항 제1호) 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위원이 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 규정에는 특별한 근거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봄.

6. 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력 확보수단 결여

- 현재 진행중인 교육정책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거나 문제점을 적시하고 시정을 구하는 일조차도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문제 시정을 위한 견제적 기능의 수행 없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의의를 갖지 못할 수 있음. 중장기 계획의 실천 가능성은 현안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지 관철 여부에 의하여 판명될 수 있음.
- 위원회에 의한 교육정책의 결정과 교육부의 집행이라는 구상이 실현되기 어려우며, 위원회의 권한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음.

7. 고등교육에 소홀할 가능성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을 담당하게 되므로 주로 유·초·중등 교육에 초점이 맞춰지게 됨.
- 그 결과 교육의 비중이 초·중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고등교육(대학)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고, 특히 대학의 연구에 관한 정책의 적절한 수립과 시행은 교육에도 긴밀하게 관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고려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 판단됨.

3. 공문발송_국교련 '10월 회장단 회의' 참석 요청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전체 회원교 교수회(협의)회 및 평의(원)회 회(의)장 및 임원
국교련 고문 및 자문위원, 정책위원회 위원 제위

참 조

제 목 제23대 국교련 '10월 회장단 회의' 참석 요청

1. 귀 대학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23대 국교련 '10월 회장단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교 회(의)장 및 임원, 국교련 고문 및 자문위원, 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0년 10월 23일(금) 15:00 ~ 24일(토) 13:00

   나. 장 소 :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

3.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석여부를 10월 13일(화요일)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한 자료(안건 및 참석여부, 회의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 첨부 : 1. 안건 및 참석여부.
2. 회의일정. 각 1부.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전문위원 함주현 사무총장 김경호 상임회장 오홍식

시행 국교련23-026 (2020.10.08.) 접수 (2020. . .)

주소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교수회관 2층
전화 064-754-2028 E-mail: newknupa@naver.com/ 공개

Ⅲ. 보고사항

1. 국교조 경과보고

- 2018년 8월 3일 : 헌법재판소 대학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 현행「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결정, 2020년 3월 31일 까지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도록 명령
- 2019년 10월 25일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창립총회 개최
- 2020년 2월 10일 : 경북대 지회설립 총회 개최
- 2020년 2월 18일 : 한국교통대 지회설립 총회 개최
- 2020년 4월 1일 : '교수노동조합 합법화 원년 선포'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앞
- 2020년 5월 14일 : 경상대학교 지회설립 총회 개최
- 2020년 5월 20일 :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
- 2020년 6월 9일 : 교원노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포(관보게제), 즉시 시행
- 2020년 6월 24일: 금오공대 지회설립 총회 개최
- 2020년 8월 11일: 교원노조법 시행령 공포
- 2020년 8월 12일: 국교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고용노동부
- 2020년 8월 13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고용노동부, 제2020-31호.
- 2020년 10월 7일: 공주대학교 지회설립 총회 개최
- 2020년 10월 22일: 한밭대 지회설립 총회 개최
-2020년 10월 22일: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및 단체교섭 시작, 교육부
- 2020년 10월 22일: 국교조 노동조합 창립 1주년 기념식, 한밭대
- 2020년 10월 23일 부터: 단체교섭 과제 제안 접수, 수시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시작합니다!

-국교조 단체교섭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존경하는 교수님!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앞두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교조는 2019년 10월 25일 창립되었고 2020년 8월 12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여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국교조는 **전국 국공립대학의 전임 교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대학의 공공성 및 자율성 확보, 국공립대학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교조는 이번에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 단체교섭을 시작합니다.

▶단체교섭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한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단체교섭에서는 국공립대학 교원의 근로 조건 및 처우 개선,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교조와 교육부의 단체 협상을 통해 관철된 요구 사항은 단체협약을 맺어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됩니다.

진학 인구 감소, 대학 재정 고갈, 학문 후속 세대 단절, 지방대학 몰락, 열악한 연구 환경과 경쟁력 약화 등 현재 대학은 위기 상황입니다. 초임 교수의 고령화, 계약 임용제 및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승진 요건 강화, 대학 구조 조정과 경쟁 격화,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대학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근본 원인은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며, 역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도 한 몫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침묵하였던 우리 대학교원들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다함께 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국교조는 이번에 시작하는 단체교섭을 위해 교수님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대학 위기의 극복과 국공립대학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2020 국교조-교육부 단체협약 과제 제안”에 의견을 적으셔서 국교조 메일(uknup2019@gmail.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국교조 활동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국교조 홈페이지(http://www.uknup.org)를 방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의 의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올림

Ⅳ. 논의사항

1. 학칙에 근거한 교수보직경비 지급 대상 검토

이한수(강원대학교 교수회장)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부

보다 나은 교육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대학평의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조 안내

1. 관련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2. 고등교육법은 대학 구성원이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정·안건 사전 안내, 회의 운영, 회의록 공개 등 대학평의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대학평의원회 제도 안착 및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학평의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내 사항 1부. 끝.

교육부장관

교육부 장관의 인

수신자 국립교육대학교, 국립대학교, 국립전문대학, 공립대학교, 공립전문대학

행정사무관 소용선 국립대학정책과장 전결 01/08 송은주

협조자

시행 국립대학정책과-130 (2020.01.06.) 접수 대학평의원회-52 (2020.01.06.)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6,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www.moe.go.kr

전화 044-203-6606 /전송 044-203-6906 / oachao@korea.kr / 공개

대학평의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내 사항

□ 회의 개최 일정 안내

○ 평의원회 회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는 때에는 평의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장소로 정하고, 평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회의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함

□ 회의 안건 및 자료 사전 안내

○ 평의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전에 회의 안건과 관련 자료를 배포하도록 함

○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는 등 예외적으로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최소한 안건 및 개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 회의 운영

○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심의사항은 반드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의사결정 과정이 각 평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질의나 토론 등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어야 함

□ 회의록 공개

○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함

○ 회의록은 회의가 있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학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야 함

○ 예외적으로 회의록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대학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대학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함

□ 의장 및 부의장 수당

○ 직책수행경비는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 활동비로서 감사·예산 등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므로,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직책수행경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이 아님

○ 관리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3], [별표15]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될 수 있으므로,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관리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이 아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 <개정 2017. 1. 6.>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제17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1.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수석전문관 포함)
2. 외무공무원	6등급
3. 연구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4. 지도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5.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6. 국가정보원 직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7. 경호공무원	4급 이상
8. 경찰공무원	총경 이상
9. 소방공무원	소방정 이상
10. 교육공무원	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총장**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11.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가급

비고: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개정 2020. 3. 10.>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원
장관(급)	대장			1,24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원
	소장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11등급 외무공무원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3급 상당)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6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4급 상당)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전문관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180,000원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	경감·경위, 소방경·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65,000원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55,000원
8·9급(상당), 1·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위, 소위, 중사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145,000원
	하사			135,000원

비고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표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은 월 900,000원을, 전문대학장은 월 750,000원을 지급한다.
2.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다. 시·도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라. 시·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소방정·소방령: 월 200,000원
      2) 소방경 이하: 월 100,000원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261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소장, 준장, 대령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5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중령, 소령, 대위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3·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준위, 원사, 상사	경감·경위·경사, 소방경·소방위·소방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7.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020년 제1차 전국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2020. 3.

교 육 부

(고등교육정책실)

교수보직경비 지급 대상에 학칙에 근거한 보직 포함(협의회)

국립대학정책과장 송은주(연락처 044-203-6804)

검토 결과 요약

❖ 「국립학교 설치령」은 교수보직경비 지급 대상을 특정 보직(부총장, 처·실장 등)을 겸직하는 교원에 한정하므로 **현행지침 유지**

☞ 교수보직경비 근거 법령 개정을 통해 지급 대상을 학칙에 위임하도록 제도개선

□ 건의 요지

○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이하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에 근거 없이 **학칙에 따른 보직(부처장, 전공주임 등)**에 교수보직경비 **지급 불가**

- **학칙에 의한 보직수행 교수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침 수정**

□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하 "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개정('19.11월, '20.2월)

- 교수보직경비 지급 대상을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대학 보직을 수행하는 교원으로 수정하여 **학칙에 따른 보직 제외**

□ 검토 의견

○ 「국립학교 설치령」 은 교수보직경비 지급 대상을 특정 보직(부총장, 처·실장 등)을 겸직하는 교원에 한정하므로 **현행지침 유지**

- 교수보직경비 근거 법령 개정을 통해 **지급 대상을 학칙에 위임**하도록 제도개선

※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9조 및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1조 일부개정 추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부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개정 안내

1. 관련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2.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학년도 대학회계 예산을 본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산집행 기본지침(현행)	2020년 예산집행 기본지침(개정)
1-1. 교수보직경비(240-01목)	1-1. 교수보직경비(240-01목)
○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9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1조에 근거하여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하는 경비(240-01목)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한다.	○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9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1조에 근거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하는 경비(240-01목)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한다.

3. 아울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립대학은 등 지침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개정) 1부. 끝.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인

수신자 국립대학교, 국립교육대학교, 국립전문대학, 공립대학교, 공립전문대학, 고등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신○○ 국립대학정책과장 전결 06/03 이○국

협조자

시행 국립대학정책과-4350 (2020.06.03.) 접수 재무과-15247 (2020.06.05.)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www.moe.go.kr
전화 044-203-6867 /전송 044-203-6908 / nrehin98@korea.kr / 공개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20.8월 개정)

4. 직무수행경비(240목)

4-1. 교수보직경비(240-01목)

○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9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1조에 근거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하는 경비(240-01목)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한다.

※ 총장의 관리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는 인건비(110-01목)에서 지급하고, 직책수행경비는 (240-02목)에서 지급한다.

○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자에게는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2. 직책수행경비(240-02목)

가. 지급대상

○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팀장 등)를 보유한 자

나. 지급기준

○ <별첨>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에 따라 집행하되, 국장급(월55만원 이상 수령자)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일선기관의 5·6·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팀장이상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퇴직, 직책 신설,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급일은 매월 1일로 하되 매월 중에 총장의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세부지침

1) 사용용도

○ 직책수행경비는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2. 교육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관련사항

송기춘(전북대학교, 국교련 정책위원장)

대학 교원에 대한 '강등' 징계의 배제

1.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상 강등 징계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의함.

-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직급을 내리지 않고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즉, 대학의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대해서는 강등의 징계는 없으며,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譴責)의 징계만 있음.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제1항은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은 비위의 유형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파면에서 견책까지의 징계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강등' 징계가 배제됨**.

2.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상의 '강등' 징계의 제외

가. 조항의 연혁

2008. 12. 11.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 대안 제안함. 2008. 12. 13. 본회의 의결. 같은 해 12. 31. 개정법률 시행. 징계의 종류로 강등 신설,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강등 징계 배제.

나. 개정 이유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 시 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995)

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반대의견

- 한국교총은 교육공무원 강등 징계 제도의 도입이 "직위 및 계급으로 분류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체에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자격제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사와 교수는 제외되고 전체 교육공무원의 약 5.8%에 해당되는 교장, 교감, 전문직에만 해당되어 형평성 시비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치 못했다는 지적을 낳을 수 있"으며, "자격제인 교육공무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함(2009. 3. 25.).[1)]

- 또한, 강등제 도입에 따라,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되었음에도 부득이 그 직위를 낮추어 임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때를 대비한 '강임'과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률 적용 및 해석상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1) 한국교총의 성명 「교육공무원 강등제, 자격제에 부합하지 않다! -교육공무원 강등제 도입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2009. 3. 25.)
http://www.kfta.or.kr/page/pressView.do?menuSeq=170000000015&currPageIndex=5&searchText=%EA%B5%90%EC%9C%A1%EA%B3%B5%EB%AC%B4%EC%9B%90%EB%B2%95&seq=171208000817

따라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강등제를 교직사회에 일반화시켜 도입할 경우 그에 따른 형평성 및 악용 소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함(위 성명서).

라. 소결

-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방법의 하나로 강등이 추가되었으나, 교원에 대해서는 변형된 강등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제도 적용이 배제되었음.

3. 대학교원에 대한 강등 징계 제외로 인한 문제점

- 공무원의 중징계 가운데 대학교원에 대해서만 강등 징계가 부정되어 중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 대학교원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는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보다 대학교원(특정직공무원)에게 더 중한 징계를 가하는 결과가 되어 교원지위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를 인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렇다고 하여 대학교원에게 교수, 부교수, 정교수의 직위에서 강등이라는 징계를 인정하는 것도, 이것이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나 직급[2]과 다르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4. 대학교원에 대한 중한(?) 징계의 위험성 해소를 위한 방안

-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제31조 제6항)와 대학의 자율성(제31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파면과 해임에 해당하는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징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징계양정에서 정직 이하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대학교원에게도 해임과 정직 사이의 적절한 수준의 징계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2) 국가공무원법 제5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 3관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2020. 7. 28.>”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7.품위유지의무 위반 하.목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고 제7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비고 제7호는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3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참조)

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3을 보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의 처리기준[3]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개정 2019. 6. 25.)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 제80조(징계의 효력)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항의 강등규정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 및 조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
>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12. 31., 2014. 1. 7., 2015. 12. 24.>

3)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은 2019. 6. 25. 개정되었으며, 개정 이전에는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의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참고자료 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개정 2018. 5. 30.) 참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12. 31., 2014. 1. 7., 2015. 12. 24.>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 법의 입법취지와 연혁[4]를 살펴볼 때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2항 2호 단서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에게 '강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육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원지위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의 신분을 더욱 보장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오히려 고등교육법에서 더욱 보호하려던 교원의 신분상의 지위가 불리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1. 어떻게 해석을 하여야 하나요?

2. 현시점에서는 법규정에 따라 2회 음주운전에 따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파면해임만을 적용해야 하는가요?

---

4)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도입된 것은 2008. 12. 31. 개정에 서였습니다. 다음 해인 2009.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도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교총에서 교과부에 징계 종류 중 '강등'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과부에서는 해임의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강등'이라는 징계를 할 수 있어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배려라고 주장하였으나, 교총에서는 '강등'을 도입하는 것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교육공무원과 같은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교육계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의 경우 그 신분보장은 헌법상의 교육지위법정주의에 따라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욱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가 도입되었으나,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 및 조교에게는 '강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파면해임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일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2회음주운전의 경우 [배제의 징계]이외에 '강등'이라는 [교정의 징계]가 있어 신분상의 지위가 보장될 수 있음에 반하여, 교원의 특수한 지위에 따라 '강등'처분을 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으로 인하여 [교정징계]는 할 수 없고 오로지 [배제징계]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없이 교원에 대하여만 다른 공무원에 비해 불리하게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3회를 한 경우와 같게 처분을 함으로써 다른 공무원 등에 비해 불평등하고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요

1. 어떻게 해석을 하여야 하나요?

▢ 공무원 징계행위의 법적 성질

- 비위사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행위가 행정처분으로서 반드시 징계를 주어야 하느냐(결정재량)와 징계 종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선택재량)에 관한 논란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징계행위는 비위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야 하므로 결정재량은 부인되고 선택재량행위임이 인정되고 있다.[5)]
-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비위사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에 있어서 징계의 종류 중 여하한 징계를 의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 징계기준의 법적 성질

- 징계행위가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징계기준에 부합하게 징계가 의결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 그러나 징계기준을 벗어난 징계를 의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한 지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의 법적 성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 징계기준은 처분기준 중에서도 제재적 처분기준에 해당한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으나 당해 처분기준이 국민 또는 주민의 신분·권리의무관계에 침익적 처분을 가지는 제재적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행정규칙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된 제재적 치분기준은 법규명령의 성격을, 부령의 형식으로 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는 입장이다.[6)]

▢ 소결

- 따라서 이 사안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제재적 처분임과 동시에 교육부령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

5) 김남진, 행정법 II, 법문사, 2001, 239면;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I, 법문사, 2005, 243-244면; 최선웅, 행정법연구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 2007. 8, 487면.
6) 대판 97누15418; 대판 96누914.

·물론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스스로가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하며, 이는 자기구속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종합하여 징계의결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행정규칙인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벗어나서 징계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현시점에서는 법규정에 따라 2회음주운전에 따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파면해임만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는 징계기준에 따라 부과해야 하나, 징계기준을 벗어나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개별 구체적이며 타당성 있는 징계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 준용되는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2회 음주운전과 3회 음주운전의 처분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학교원 및 조교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2회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3회 음주운전의 처분과 동일하게 되어 「고등교육법」상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공무원과 비교하여 침해의 정도가 더욱 큽니다.

  ·강등의 적용이 없으므로 해서 2회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배제징계만이 남게 되어 이는 대학교원 및 조교의 신분에 대하여 결정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하게 된다.
- 따라서 이는 일반 공무원의 징계를 위한 기준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별표기준을 벗어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교원 및 조교의 음주운전행위에 있어서의 개별 구체적이며, 적절한 징계의 종류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질의

- 별도의 논지 없이 동지同旨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음주운전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12. 31., 2014. 1. 7., 2015. 12. 24.>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징계기준 등) [대통령령]

①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4조 [교육부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4의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음주운전 규정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9. 6. 25.>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table>
<tr><th colspan="3">음주운전 유형</th><th>처리기준</th><th>비고</th></tr>
<tr><td rowspan="2">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d colspan="2">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td><td>정직 - 감봉</td><td rowspan="10">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td></tr>
<tr><td colspan="2">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td><td>강등 - 정직</td></tr>
<tr><td colspan="3">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d>파면 - 강등</td></tr>
<tr><td colspan="3">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d>파면 - 해임</td></tr>
<tr><td colspan="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td><td>강등 - 정직</td></tr>
<tr><td colspan="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d>파면 - 강등</td></tr>
<tr><td rowspan="4">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td><td colspan="2">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td><td>해임 - 정직</td></tr>
<tr><td colspan="2">사망사고의 경우</td><td>파면 - 해임</td></tr>
<tr><td rowspan="2">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td><td>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td><td>해임 - 정직</td></tr>
<tr><td>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td><td>파면 - 해임</td></tr>
<tr><td rowspan="2">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d colspan="2">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td><td>파면 - 해임</td></tr>
<tr><td colspan="2">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td><td>해임 - 정직</td></tr>
</table>

Ⅴ. 기타사항

1. 교수신문 논설위원 추천 및 기고 필진 참여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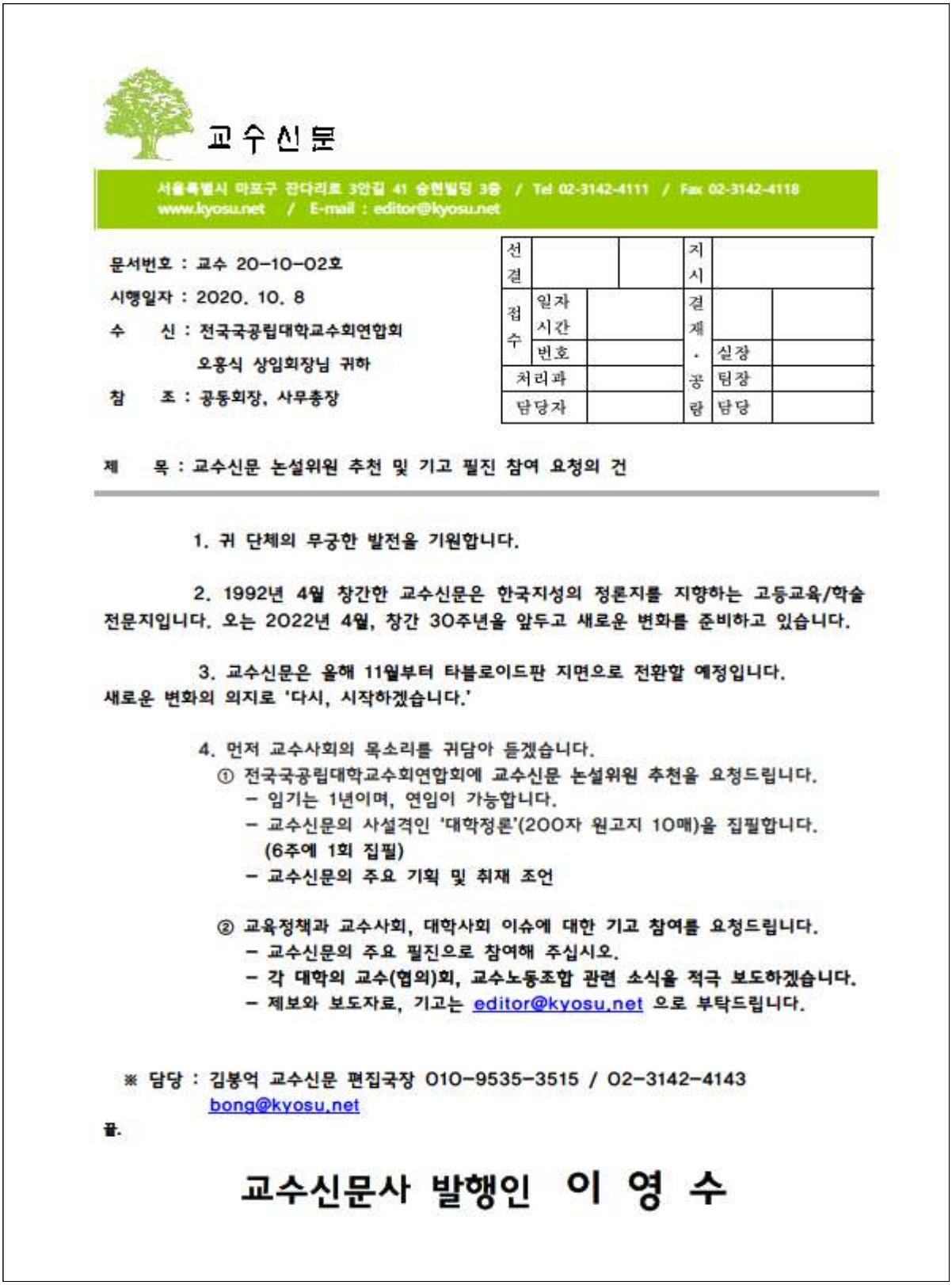

교수신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3안길 41 승현빌딩 3층 / Tel 02-3142-4111 / Fax 02-3142-4118
www.kyosu.net / E-mail : editor@kyosu.net

문서번호 : 교수 20-10-02호
시행일자 : 2020. 10. 8
수 신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오홍식 상임회장님 귀하
참 조 : 공동회장, 사무총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공람		
	시간				
	번호			실장	
처리과				팀장	
담당자				담당	

제 목 : 교수신문 논설위원 추천 및 기고 필진 참여 요청의 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92년 4월 창간한 교수신문은 한국지성의 정론지를 지향하는 고등교육/학술 전문지입니다. 오는 2022년 4월, 창간 3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교수신문은 올해 11월부터 타블로이드판 지면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의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 먼저 교수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 교수신문 논설위원 추천을 요청드립니다.
-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 교수신문의 사설격인 '대학정론'(200자 원고지 10매)을 집필합니다. (6주에 1회 집필)
- 교수신문의 주요 기획 및 취재 조언

② 교육정책과 교수사회, 대학사회 이슈에 대한 기고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교수신문의 주요 필진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 각 대학의 교수(협의)회, 교수노동조합 관련 소식을 적극 보도하겠습니다.
- 제보와 보도자료, 기고는 editor@kyosu.net 으로 부탁드립니다.

※ 담당 : 김봉억 교수신문 편집국장 010-9535-3515 / 02-3142-4143
bong@kyosu.net

끝.

교수신문사 발행인 이 영 수

색 지

색 지

Ⅵ. 별 첨

1. 국교련 회칙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칙

2017. 08. 18. 개정

◎ 제1조 [명칭]
본회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약칭 "국교련")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가 연대하여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교육, 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공립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회원]
본회는 전국의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한다.

◎ 제4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상임회장교에 둔다.

◎ 제5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상임회장의 임기 만료 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인 이상의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 상임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서면위임을 포함한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 총회는 출석 회장(의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은 불참 시 총회에서의 권한행사를 소속대학의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회장단의 2/3 이상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서면 결의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에는 재적 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제6조 [회장단]
① 본회에는 상임회장 1인을 둔다.
② 본회에는 23인 이내로 공동회장을 두되, 대학의 규모와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전임교원 수 500인 이상의 회원교 대표
2. 교육대학(교원대 포함) 중 3개 회원교 대표
3. 1호와 2호에 속하지 않은 대학 중 8개 회원교 대표

◎ 제7조 [회장단의 선출]

① 각 회원교의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은 각 회원교가 1표씩 가지며, 위임받아 출석한 대리인은 선거권만을 가진다.

② 상임회장은 소속대학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자 중에서 공동회장단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③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공동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제6조 제2항 제2호의 공동회장은 교육대학(교원대 포함) 교수(협의)회 회장(의장)들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6조 제2항 제3호의 공동회장은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6조 제2항 제2호에 속하지 않는 회원교의 회장(의장)들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 [회장단의 임기]

①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회장이 상임회장의 직을 사퇴하거나, 유고의 사유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그 잔여임기가 3월 이상이면 공동회장단에서 재 선출 하고 총회에서 추인 받으며, 3월 미만이면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그 회원교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상임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와 제3항의 승계에 의한 공동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9조 [회장단의 직무]

① 상임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단이 처리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② 공동회장은 상임회장의 직무를 권역별 또는 직능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 제10조 [회장단회의]

① 회장단회의는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단 구성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상임회장이 소집한다.

② 상임회장은 회장단회의의 의장을, 사무총장은 회장단회의의 서기를 겸한다.

③ 감사와 고문, 자문위원 및 정책위원, 특별위원, 전문위원은 회장단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회장단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회장단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단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
2. 상임회장이나 회장단 구성원 1/3 이상이 회의에 상정한 안건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회장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 [감사]

① 본회에는 감사 2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퇴나 기타 사유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8조 제3항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 [사무처]
① 본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 전문위원 및 간사 약간 명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상임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회장단의 직무를 보좌한다.
④ 전문위원과 간사는 상임회장이 임명하며, 상임회장의 직무를 보조한다.

◎ 제13조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상임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전임 상임회장 중 약간 명을 고문으로, 회원교 전임 교수(협의)회 회장(의장) 중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4조 [정책위원회]
① 본 회의 정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단을 보좌하는 정책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장)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총회와 회장단회의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본회에 회장단회의의 결정으로 회장단을 보좌하는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6조 [재정]
① 회원교는 총회에서 정하는 일정액의 연회비와 사업에 따른 분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7조 [회원자격의 정지]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8조 [일반 관례]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제19조 [개정]
이 회칙은 총회에서 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회칙은 1994년 04월 01일 총회에서 제정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1997년 04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1999년 04월 0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0년 0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2년 02월 0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4년 04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5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5년 04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7년 04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8년 0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9년 04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0년 02월 0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1년 04월 0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2년 02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03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09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0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08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회원교 연락처

2020. 9. 11. 현재

	대학	직책	성명	연구실 전화	휴대폰 번호	이메일	임기
1	강릉원주 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철원	033-760-8786	010-6376-2772	cwpark1@gwnu.ac.kr	2019.9.18~ 2021.9.17
		부회장(원주캠퍼스)	신준	033-760-8744	010-9430-2142	jshin@gwnu.ac.kr	
		사무처장	김세훈	033-640-2367	010-9123-9867	vitamineshkim@gmail.com	2019.12.10 ~2021.9.17
		정책국장	한기련	033-640-2859	010-2340-8606	hanaro@gwnu.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gwnupa@gwnu.ac.kr *전화번호: 033-640-2749 *fax: 033-640-2749 *담당자:김소연 ■주 소: (25457)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교육지원센터 214호 교수회 010-9305-8230					
2	강원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한수	033-250-8530	010-7363-5124	hslee@kangwon.ac.kr	2020. 3.~ 2022. 2.
		부회장(춘천)	남우동	033-258-2308	010-5360-4345	osnamkangwon.ac.kr	
		사무총장(춘천)	박태현	033-250-6526	010-8399-4141	pthkangwon.ac.kr	
		부회장(삼척)	유원근	033-570-6645	010-4380-5080	ywkkm@kangwon.ac.kr	
		부회장(삼척)	정미경	033-540-3351	010-8604-0707	mkjoeng@kangwon.ac.kr	
		사무총장(삼척)	강윤식	033-570-6592	010-4550-8207	kangys@kangwon.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professociation@kangwon.ac.kr *전화번호: 033-250-7328 *fax: 033-259-5502 (가급적 메일로 부탁) *담당자: 이수미 ■주 소: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교수회					
3	경남과학기술 대학교 교수회	의장	김성호	055-751-3666	010-2831-1222	shkim15@gntech.ac.kr	2019.07~ 2021.06
		부의장	최경옥	055-751-3256	010-7119-7252	choiok@gntech.ac.kr	
		사무국장	권혁진	055-751-3427	010-7773-5502	residusk@gntech.ac.kr	
		간 사	신재익	055-751-3663	010-2805-4534	sji@gntech.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faculty@gntech.ac.kr *전화번호: 055-751-3708 *담당자 : 김숙민 ■주 소: (52725)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구본관 1층 109호 교수회					
4	경북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만	053-950-5328	010-9814-8665	manpark@knu.ac.kr	2020.03~ 2022.02
		부의장	김성룡	053-950-6223	010-3432-2947	kimsr@knu.ac.kr	
		부의장	조광수	053-950-5831	010-8912-0939	polphy@knu.ac.kr	
		부의장	오세욱	054-530-1227	010-6658-2379	osw@knu.ac.kr	
		사무처장	이광률	053-950-7373	010-6444-7755	georiver@knu.ac.kr	
		사무부처장	이규필	053-420-4924	010-9391-2982	gdfeel@hanmail.net	
		사무부처장	김명옥	053-950-5792	010-8589-3333	ok4325@knu.ac.kr	
		사무부처장	백승민		010-7220-7082	smpaek@knu.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prfa@knu.ac.kr *전화번호: 053-950-5015 *fax: 053-959-5266 *담당자: 배원미 ■주 소: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교수회 (복지관 3층)					
5	경상대학교 교수회	회장	백승철	055)772-8084	010-3874-6013	scbaik@gnu.ac.kr	2020.03~ 2022.02
		부회장	윤석주	055)772-2214	010-9767-0542	ysj@gnu.ac.kr	
		부회장(통영)	정우건	055)772-9151	010-3865-6677	jwg@gnu.ac.kr	
		부회장(칠암)	화정석	055)750-8924	010-2777-6243	seogee@gnu.ac.kr	
		정책국장	이선애	055)772-2173	010-7471-3433	sunaelee@gnu.ac.kr	
		사무국장	이정민	055)772-1083	010-9223-2615	poohcrescentia@hanmail.net	
		■사무실: *이메일주소: faculty@gnu.ac.kr *전화번호: 055-772-0051 *fax: 055-772-0053 *담당자 : 신영선 ■주 소: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본부 5층 514호 교수회 사무실					

6	경인교육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호	032-540-1223	010-3199-2702	kimho@ginue.ac.kr	2020.02~
		부회장	이경민	031-470-6323	010-2044-3271	leekm@ginue.ac.kr	
		부회장	박재근	031-470-6246	010-2257-9879	jkpark@ginue.ac.kr	
		총무	윤성준	032-540-1251	010-9178-3430	yun-111-@ginue.ac.kr	
		총무	황필아	032-540-1430	010-9188-2521	pilahh@ginue.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faculty@ginue.ac.kr *전화번호: 032-540-1220 *fax: 032-540-1310 ■주 소: (2104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경인교육대학교 인문사회관 412호					
7	공주교육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한명숙	041-850-1628	010-3446-6168	eduhan@gjue.ac.kr	2020.04~ 2022.03
		부회장	김한제	041-850-1603	010-2594-2830	hjkim@gjue.ac.kr	
			조혜영	041-850-1727	010-8935-6930	johye@gjue.ac.kr	
		총무	조윤조	041-850-1683	010-7452-5263	choyooncho@gjue.ac.kr	
			김범수	041-850-1711	010-7104-2422	reflets@gjue.ac.kr	
			손재천	041-850-1666	010-2622-5462	jsohn74@gjue.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profcoun@gjue.ac.kr. 전화번호: 041-850-1727 *담당자: 조혜영 교수 (부회장) ■주 소: (32553)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7 공주교육대학교 입지관 509 한명숙 교수 연구실					
8	공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서정호	041-850-8542	010-9420-8805	jhseo@kongju.ac.kr	2020.9.1~ 2022.8.31
		부회장	김진권	041-850-8496	010-7350-7332	jkim@kongju.ac.kr	
		부회장	김재웅	041-521-9228	010-7452-0388	jykim@kongju.ac.kr	
		부회장	정남수	041-330-1265	010-5589-2686	ruralplan@kongju.ac.kr	
		부회장	최선	041-850-8341	010-3424-8519	csun@kongju.ac.kr	
		사무국장	이명수	041-850-8391	010-2969-6323	myungsoo.yie@kongju.ac.kr	
		간사	이철우	041-850-8374	010-7581-8802	leecu@kongju.ac.kr	
		간사	박현상	041-521-9157	010-3420-7584	vandammm@kongju.ac.kr	
		간사	조근자	041-850-0333	010-3390-7920	kjcho@kongju.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prof@kongju.ac.kr *전화번호: 041-850-8760 *fax: 041-850-8761 *담당자: 김가희 ■주 소: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사범대학관(구 대학본부) 203호 교수회사무실					
9	광주교육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방기혁	062-520-4193	010-9213-4835	ghbang@gnue.ac.kr	2019.8.29~ 2021.8.28
		부회장	구재명	062-520-4217	010-8905-6467	jg349@gnue.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nykim4190@gnue.ac.kr *전화번호: 062-520-4190 *fax: 062-520-4199 *담당자: 김남이 ■주 소: (61204)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풍향동 1-1)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10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유경숙	063-469-4815	010-5637-1071	ksyou@kunsan.ac.kr	2020.03~ 2022.02
		상임부의장	원명수	063-469-4630	010-9197-9157	wondain@kunsan.ac.kr	
		부의장	정현채	063-469-1822	010-2703-2565	hcx@kunsan.ac.kr	
		부의장	송병호	063-469-4524	010-6629-4260	bhsong@kunsan.ac.kr	
		사무국장	조혜영	063-469-4804	010-7541-7958	elfish80@kunsan.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faculty@kunsan.ac.kr *전화번호: 063-469-4278 (평의회사무실) *담당자: 김우형 조교 ■주 소: (5415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미룡동) 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2층 교수평의회					
11	금오공과 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상호	054-478-7656	010-9502-4387	kimsh@kumoh.ac.kr	2019.03~ 2021.02
		부회장	한규필	054-478-7525	010-4523-4724	kphan@kumoh.ac.kr	
		사무국장	임기무	054-478-7780	010-8605-4791	kmlim@kumoh.ac.kr	
		감사	채 석	054-478-7451	010-5175-4262	schae@kumoh.ac.kr	
		감사	박노진	054-478-7736	010-7736-4337	njpark@kumoh.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prof@kumoh.ac.kr *전화번호: 054-478-6963 *fax: 054-478-6964 *담당자: 김민아 ■주 소: (39177)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					
12	대구교육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배상식		010-2801-0468	sasbae@dnue.ac.kr	2019.03. ~ 2020.03. (일단유지)
		부회장	김유정		010-9895-2164	yjkim@dnue.ac.kr	
		부회장	손교용		010-4652-7719	gysohn@dnue.ac.kr	
		■사무실: *이메일: faculty@dnue.ac.kr *전화번호 : *fax : *담당자: ■주 소: (42411)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배상식 교수님					

13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이헌종	061-450-2422	010-3500-2165	ruslee@mokpo.ac.kr	2020.06.~ 2022.05.
		부의장	이창대	061-450-2653	010-2692-0393	leecdai@mokpo.ac.kr	
		사무처장	변경석	061-450-2418	010-4369-3104	ksbyun@mokpo.ac.kr	
		편집위원장	김정화	061-450-2363	010-3784-0533	kimjh0929@mokpo.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pyung@mokpo.ac.kr *전화번호: 061-450-2961 *fax: 061-450-2974 *담당자: 박연화 ■주 소: (58554)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교수협의회					
14	목포해양 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노창균	061-240-7172	010-3886-9439	cknoh@mmu.ac.kr	2020.04.~ 2022.03.
		부의장	김건우	061-240-7319	010-2735-2528	gwkim@mmu.ac.kr	
		사무처장	장선영	061-240-7352	010-4320-6121	syjang6121@mmu.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proforg@mmu.ac.kr *전화번호: 061-240-7012, 010-8102-7667 *담당자: 박종식 ■주 소: (58628)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					
15	부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두진	051-629-5447	010-6357-4263	kdjin@pknu.ac.kr	2020.03~ 2022.02
		부회장	한혜경	051-629-5482	010-5303-8589	hancon@pknu.ac.kr	
		총무이사	허균	051-629-5970	010-9782-0736	gyunheo@pknu.ac.kr	
		재무이사	신인용	051-629-5726	010-3202-0548	shiny@pknu.ac.kr	
		기획이사	안상욱	051-629-6840	010-2090-4669	ahnsangwuk@pknu.ac.kr	
		교학이사	김창우	051-629-6392	010-2574-9842	kimcw@pknu.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faculty@pknu.ac.kr *전화번호: 051-629-7321 *fax: 051-629-7322 *담당자: 김순주 ■주 소: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학본부 605호					
16	부산교육 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	황홍섭	051-500-7228	010-2621-7567	hongseop@bnue.ac.kr	2019.04~
		부의장	김순식		010-2884-4061	kimss640@bnue.ac.kr	
		총무	조진석		010-9794-3389	dol0425@bnue.ac.kr	
		■*회장님께 직접 연락 *이메일주소: hongseop@bnue.ac.kr *전화번호 *담당자: 회장님께 직접 연락 ■주 소: (4750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거제동),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황홍섭 교수님					
17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한성	051-510-2409	010-2471-2409	hanseongkim@pusan.ac.kr	2019.03~ 2021.02
		수석부회장	윤기헌		010-2704-9126	toon@pusan.ac.kr	
		부회장	김기왕		011-340-2712	kimgiwang@hanmail.net	
		부회장	김성연		010-5243-8689	suye@pusan.ac.kr	
		사무총장/재정위원장	유진욱		010-5623-6364	jinwook@pusan.ac.kr	
		권익복지위원장	장승철		010-9429-2276	s.c.chang@pusan.ac.kr	
		기획홍보위원장	최송현		010-9163-2931	songchoi@pusan.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chairman@pusan.ac.kr *전화번호: 051-510-1224~5 *fax: 051-515-2236 *담당자: 김태형 ■주 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교수회관 2층					
18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신윤호	02-970-6257	010-7380-0777	yhshinn@seoultech.ac.kr	2019.03~ 2021.02
		부의장	고영준	02-970-6656	010-3758-4829	yjko@seoultech.ac.kr	
		부의장	김소라	02-970-6264	010-4388-9422	srk2104@seoultech.ac.kr	
		사무처장	박형철	02-970-6460	010-2419-4785	hcpark@seoultech.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hounok@seoultech.ac.kr, *전화번호: 02-970-6907 *담당자: 김현옥 ■주 소: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본부 501호					
19	서울교육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박일우	02-3475-2454	010-9271-8354	iwpark@snue.ac.kr	2017.09~ 2019.08 (공석)
		부회장	임희정		010-2638-5347	hjihm@snue.ac.kr	
		총무	김태은		010-7900-7972	tekim@snue.ac.kr	
		총무	홍성두		010-3958-6270	secshsd@snue.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snueprof@snue.ac.kr *전화번호: 회장님께 연락 ■주 소: (0663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우면로 96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박일우 교수님					

20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조철원	02-880-6079	010-5494-3866	cwcho@snu.ac.kr	2019.3. ~ 2021.04
		수석부회장	이영섭	02-880-8511	010-7310-6676	ysrhee@snu.ac.kr	
		부회장	윤석민	02-880-6470	010-3380-6586	younsm@snu.ac.kr	
			박태성	02-880-8924	010-5557-8924	tspark@snu.ac.kr	
			윤명환	02-880-1403	010-3518-3207	mhy@snu.ac.kr	
			강성춘	02-880-2597	010-6740-7622	sk229@snu.ac.kr	
			이상기	02-880-4647	010-9291-2916	srheesnu@snu.ac.kr	
			고학수	02-880-2602	010-6400-5911	hsk@snu.ac.kr	
			김정용	02-880-7756	010-7927-4103	jyfaust@snu.ac.kr	
			이유리	02-880-6845	010-9084-4465	yulee@snu.ac.kr	
			민은기	02-880-7950	010-2244-7950	-	
			권성택	02-2072-3759	010-5207-3759	stk59@snu.ac.kr	
			김성완	02-2072-3126	010-9012-6513	sungwan@snu.ac.kr	
			백정화	02-880-2322	010-8981-0861	baekjh@snu.ac.kr	
		감사	최윤영	02-880-6137	010-3020-1857	melusine@snu.ac.kr	
			정낙신	02-880-7850	010-6239-3466	lakjeong@snu.ac.kr	
		총무이사	이영목	02-880-6117	010-9034-4861	opcit207@snu.ac.kr	
		기획이사	노상호	02-880-2333	010-2969-9795	sangho@snu.ac.kr	
		■사무실: *이메일: faculty@snu.ac.kr *전화번호: 02-880-5195 *fax: 02-883-6315 *담당자: 김영남 ■주 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행정관(60동) 2층 교수협의회					
21	서울시립 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성호	02-6490-2227	010-8910-2168	shlee@uos.ac.kr	2020.9.1 ~ 2022.8.31
		부회장	박병은	02-6490-2343	010-6476-2226	pbe@uos.ac.kr	
		부회장	김소라	02-6490-2776	010-3342-5171	skim@uos.ac.kr	
		사무총장	김광일	02-6490-2594	010-2402-8000	kikim@uos.ac.kr	
		사무부총장	김승일	02-6490-2686	010-9255-9251	ksi2204@uos.ac.kr	
		■사무실: *이메일: faculty@uos.ac.kr *전화번호: 02-6490-6802 *fax: 02-6490-6804 *담당자: 최경희 ■주 소: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 (대학본부 6층 7615호)					
22	순천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홍균	061-750-3455	010-2417-1454	phg@scnu.ac.kr	2020.4.~
		부의장	오시영	061-750-3716	010-2960-6248	osy2010@scnu.ac.kr	
		부의장	박정희	061-750-5242	010-2124-8288	jhp@scnu.ac.kr	
		사무처장	심왕근	061-750-3568	010-2610-0793	wgshim@scnu.ac.kr	
		■사무실: *이메일: faculty@sunchon.ac.kr *전화: 061-750-3993 *fax: 061-750-3998 *담당자:임정미 ■주 소: (57922)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석현동) 순천대학교 대학본부 6층 교수회(602호실)					
23	안동대학교 교수회	회장	안상준	054-820-5372	010-2857-5185	ph410@anu.ac.kr	2020.3.~ 2022.2
		부회장	박주영	054-820-5403	010-4007-0149	jypark@anu.ac.kr	
		제1국장	김영천	054-820-6810	010-9321-1359	kimyc@anu.ac.kr	
		제2국장	최형우	054-820-5509	010-2354-8914	hwchoi@anu.ac.kr	
		■사무실: *이메일: faculty@anu.ac.kr *전화번호: 054-820-7201 *fax: 054-820-7202 *담당자: 허혜정 ■주 소: (36729)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송천동) 안동대학교 학생회관 6층 A601 교수회					
24	인천대학교 교수회	회장	유병국	032-835-8529	010-9254-8819	bkyoo@incheon.ac.kr	2018.11~ 2020.10
		부회장	정영식	032-835-8433	010-6331-4544	yscst@incheon.ac.kr	
		사무국장	이영애	032-835-8253	010-7758-7024	lae0815@inu.ac.kr	
		사무국장	송찬근	032-835-8291	010-5490-7110	baybreeze119@inu.ac.kr	
		정책국장	김순홍	032-835-8523	010-2241-4116	snow8817@incheon.ac.kr	
		■사무실: *이메일: inufa@inu.ac.kr *전화번호: 032-835-8857 *fax: 032-835-8857 *담당자: 서희 실무관 ■주 소: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교수회관 101호 인천대학교 교수회					

25	전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도형	062-530-5000/1894	010-5451-6558	kdhh@jnu.ac.kr	2019.9.1.~ 2021.8.31.
		수석부회장	김근중	062-530-5002/3403	011-9762-9834	gjkim@chonnam.ac.kr	
		부회장	신해진	062-530-3137	010-5202-3914	hjshin@jnu.ac.kr	
		부회장	김정선	062-530-4957	010-6530-1805	suji414@jnu.ac.kr	
		사무처장	홍창국	062-530-1907	010-3719-7483	hongck@chonnam.ac.kr	
		부의장	김재형	062-530-5001/5844	010-9676-4419	tmjkim@chonnam.ac.kr	
		기획이사	홍창국	062-530-1907	010-3719-7483	hongck@chonnam.ac.kr	
		총무이사	김정일	062-530-2189	010-8927-9646	kimji@chonnam.ac.kr	
		■사무실: *이메일: A5017@jnu.ac.kr *전화번호: 062-530-5003 *fax: 062-530-5004 *담당자: 정재우 ■주 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3층 교수평의회/교수회					
26	전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창헌	063-270-2589	010-6605-2589	leech@jbnu.ac.kr	2019.03~ 2021.02
		부회장	소은선	063-270-2402	010-9498-2802	ses@jbnu.ac.kr	
		부회장	이인재	063-270-3325	010-2678-8781	ijlee@chonbuk.ac.kr	
		감사	임경택	063-270-3200	010-7759-4056	yimkt02@jbnu.ac.kr	
		사무처장	임익태	063-270-4761	010-9691-1507	itim@jbnu.ac.kr	
		■사무실: *이메일: faculty@jbnu.ac.kr, areum97@jbnu.ac.kr *전화번호: 063-270-2011 *FAX: 063-270-2012 ■주 소: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진수당 368호 *담당자: 송나현					
27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박종필	063-281-	010-	parkjp@jnue.kr	2018.03.~ 2020.02. (일단유지)
		부회장	강효진		010-5503-6364	hjkang@jnue.kr	
		부회장	배선아		010-5460-3870	sabae@jnue.kr	
		총무	서현석		010-6430-2266	hsseo@jnue.kr	
		■사무실: *이메일주소: tkkim@jnue.kr *전화번호: *fax: 063-281-7151 *담당자: 김태규 ■주 소: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연합회 (과학교육과 김태규 교수연구실)					
28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 장	오홍식	064-754-3283	010-6800-8679	sciedu@jejunu.ac.kr	2018.11.1. ~ 2020.10.31
		수석부회장	고전	064-754-4895	010-5399-7526	koj@jejunu.ac.kr	
		부회장(여교수협의회장)	홍희숙	064-754-3534	010-2693-6208	heesookh@cheju.ac.kr	
		부 회 장	강주영	064-754-2978	010-8910-4908	iuskang@jejunu.ac.kr	
		정책처장	제갈윤석	064-754-3257	010-3181-6804	eejekal@jejunu.ac.kr	
		사무처장	최수석	064-754-3644	010-2499-1769	sooseok@jejunu.ac.kr	
		기획.연구위원장	이창희	064-754-2815	010-6287-7524	changt272@naver.com	
		교권.복지위원장	강영준	064-754-5103	010-2543-2083	jedarm@cheju.ac.kr	
		학사.재정위원장	고창열	064-754-3149	010-7255-2286	kocy@jejunu.ac.kr	
		제도개선위원장	서혜원	064-754-3512	010-4377-7598	fireflyshw@yahoo.com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욱	064-754-2936	010-9245-3820	piarri@jejunu.ac.kr	
		■사무실: *이메일: jejuprof@jejunu.ac.kr *전화번호: 064-754-2088 *fax: 064-754-2089 *담당자: 박서림 ■주 소: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1, 제주대학교) 효담교수회관 2층					
29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강홍재	055-740-1234	010-4436-7732	kanghj@cue.ac.kr	2020.2
		부회장	조윤주		010-3885-7086	yjcho@cue.ac.kr	
		총무	이호철		010-5135-6621	lhc9203@cue.ac.kr	
		■사무실: *이메일: kanghj@cue.ac.kr *전화번호: *fax: 055-740-1246 ■주 소: (52673)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길 3 진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강홍재 교수님					
30	창원대학교 교수회	의장	류병관	055-213-3208	010-2314-1688	ryu1688@changwon.ac.kr	~ 2021.8.31
		부의장	진교홍	055-213-3657	010-2460-9331	khjin@changwon.ac.kr	
		부의장	유현수	055-213-3682	010-6533-8588	hsryu@changwon.ac.kr	
		사무국장	박능생	055-213-3923	010-2723-0418	nungseak@hotmail.com	
		■사무실: *이메일주소: kyosu@changwon.ac.kr *전화번호: 055-213-4705 *fax: 055-213-4706 *담당자: 안혜정 ■주 소: (5114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교수회사무실					
31	청주교육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한대희	043-299-0741	010-6396-8716	handh@cje.ac.kr	2020.04 ~ (일단유지)
		부회장					
		총무					
		■사무실: *이메일주소: handh@cje.ac.kr *전화번호: *fax: 043-299-0748 *담당자: ■주 소: (2869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5 (수곡동) 청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힌대희 교수님					

32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회	의장	이승복	033-260-6523	010-9219-4193	leesb@cnue.ac.kr	2020.03~ 2022.02
		부의장	조순이	033-260-6483	010-7586-1456	music@cnue.ac.kr	
		부의장	유용길	033-260-6471	010-4033-6471	youngyu@cnue.ac.kr	
		■사무실: 사무실 없음. 의장에게 연락바람. *이메일주소:leesb@cnue.ac.kr ■주소: (24326)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126 (석사동 춘천교육대학교)					
33	충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종성	042-821-5862	010-2730-7319	rambokjs@cnu.ac.kr	2019.03~ 2021.02
		부회장	김정윤	042-821-6419	010-9267-1388	jykim@cnu.ac.kr	
		부회장	류광해	042-821-5833	010-9680-3400	rkhae@hanmail.net	
		사무처장	이승선	042-821-6375	010-3417-7448	girirang@cnu.ac.kr	
		상임운영위원	최인호	042-821-5802	010-9406-4719	iamchoi99@hatmail.net	
		상임운영위원	김형준	042-821-5579	010-6778-4584	bizguru@cnu.ac.kr	
		상임운영위원	김상겸	042-821-5930	010-4717-5494	sangkim@cnu.ac.kr	
		비상임운영위원	양석조	042-821-6859	010-5131-6859	sjyang@cnu.ac.kr	
		비상임운영위원	이정순	042-821-6830	010-5312-8004	jungsoon@cnu.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prof@cnu.ac.kr *전화번호: 042-821-5091 *fax: 042-822-9637 *담당자: 고옥란 ■주 소: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본부별관 (E7-1동) 5층 515호					
34	충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성덕	043-261-3789	010-2470-2742	sdlee@chungbuk.ac.kr	2020.04~ 2022.03
		부회장	류연택	043-261-2694	010-4731-2405	ytryu@chungbuk.ac.kr	
		사무처장	박종석	043-261-3162	010-6470-2922	jpark16@chungbuk.ac.kr	
		기획이사	박명환	043-261-2736	010-4047-9447	mhpark98@chungbuk.ac.kr	
		교학분과위원장	김일화	043-261-2571	010-4206-3010	illhwa@chungbuk.ac.kr	
		법제분과위원장	박일영	043-261-2812	010-2383-2812	parkiy@chungbuk.ac.kr	
		재정분과위원장	이연호	043-261-2215	010-9992-2215	leeyh@chungbuk.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faculty@chungbuk.ac.kr *전화번호: 043-261-3087 *fax: 043-276-8314 *담당자: 권숙희 ■주 소: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대학본부(N10동) 7층 701호					
35	한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오호택	031-670-5301	010-4322-5152	oht@hknu.ac.kr	2019.10.1 ~ 2021.9.30
		부회장	조용훈	031-670-5273	010-7309-7632	yhcho@hknu.ac.kr	
		부회장	김혜정	031-670-5364	010-3353-2566	kuri@hknu.ac.kr	
		사무처장	하재원	031-670-5153	010-9638-8426	hjw@hknu.ac.kr	
		사무처장	이주영	031-670-5213	010-7405-2426	lohawi@hknu.ac.kr	
		■사무실: *이메일: eprof@hknu.ac.kr *전화번호: 031-670-5266 *fax: 031-670-5309 *담당자: ■주 소: (1757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석정동) 한경대학교 교수회					
36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회평의회	의장	박종률	043-230-3486	010-5459-5265	pjl0703@knue.ac.kr	2020.03~ 2022.02
		부의장	권순회	043-230-3551	010-3450-2293	ksh0225@knue.ac.kr	
		사무총장	김현욱	043-230-3466	010-7196-0820	gold@knue.ac.kr	
		운영위원	이경화	043-230-3544	010-4219-9036	leadread@hanmail.net	
		운영위원	이경택	043-230-3772	010-8143-9376	ktlee@knue.ac.kr	
		운영위원	김용	043-230-3403	010-5759-4132	kyong@knue.ac.kr	
		■사무실: *이메일: faculty@knue.ac.kr *전화번호 : 043-230-3018(교수지원과) *담당자: 김현욱 교수 ■주 소: (2817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회평의회					
37	한국교통 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철원	043-841-5446	010-7233-2639	ycone@ut.ac.kr	2020.03 ~
		부회장	한철희	043-841-5379	010-9143-3574	chhan@ut.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utpa@ut.ac.kr *전화번호: 043-841-5048 *fax: 043-841-5049 *담당자: 김선미 ■주 소: (27469)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한국교통대학교 본관 8층 806호 교수회 사무처					
38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정민승	02-3668-4663	010-2753-0394	msjung@knou.ac.kr	2018.01~
		부회장	변지원	02-3668-4578	010-6380-0368	jwbyun@knou.ac.kr	
		정책국장	장호찬	02-3668-4461	010-2338-4461	hcjang@knou.ac.kr	
		사무총장	이봉민	02-3668-4406	010-7714-5137	leebmin@knou.ac.kr	
		감사	정성희	02-3668-4747	010-7192-1965	sjeong@knou.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 leebmin@knou.ac.kr, kyohup@knou.ac.kr *전화번호: *fax: 02-3673-4274 *담당자: ■주 소: (0308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9	한국체육 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문원재	02-410-	010-3660-6951	wjmoon@knsu.ac.kr	2020.4.1~ 2022.2.
		부의장	허진석		010-5272-0763	huhball@knsu.ac.kr	
		부의장	박호근		010-8268-4865	hoohoo386@knsu.ac.kr	
		사무총장	장익영		010-2600-9201	ikyoungchang@gmail.com	
		사무부총장	김지연		010-9518-3567	jykim@knsu.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ikyoungchang@gmail.com *fax: 02-410-6818 *담당자: 장익영 사무총장님께 연락 ■주 소: (055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본관 202호					
40	한국해양 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상구	051-410-4671	010-9047-4407	ksg1515@kmou.ac.kr	2019.03~ 2021.02
		부회장	이상일	051-410-5099	010-6277-6684	silee@kmou.ac.kr	
		사무처장	안미정	051-410-5278	0110-2257-8563	gasirian@kmou.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kyohyup@kmou.ac.kr *전화번호: 051-410-4200 *담당자: 김영민 ■주 소: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 5층 교수회사무실					
41	한밭대학교 교수회	회 장	임경빈	042-821-1465	010-5209-5085	kblim024@hanbat.ac.kr	2018.09~
		부 회 장	이봉호	042-821-1886	010-7121-1542	lbh011@hanbat.ac.kr	
		부 회 장	이준우	042-821-1885	010-4743-6609	leejw@hanbat.ac.kr	
		사무처장	진경일	042-821-1119	010-3290-3646	classic9@hanbat.ac.kr	
		정책국장	김기태	042-821-1885	010-9599-5857	gitaekim@hanbat.ac.kr	
		감 사	박준식	042-821-1276	010-3741-1221	jsphb@hanbat.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kyopyung@hanbat.ac.kr *전화번호: 042-821-1466 *fax: 042-821-1895 *담당자: 김미영 ■주 소: (34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한밭대학교 본관(N1동) 1층 106호 교수회					

국교련 사무국	상임회장	오홍식	010-6800-8679	sciedu@jejunu.ac.kr	2020.03~
	사무총장	김경호	010-2488-5988	kimgyongho@hotmail.com	
	전문위원	함주현	010-8790-2010	hampd@jejunu.ac.kr	
	기획간사	정영훈	010-4876-6156	youjin911@jejunu.ac.kr	
	■ 사무실: *전화: 064-754-2028 *팩스: 064-754-2089 ■ E-mail: newknupa@naver.com ■ 주 소: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교수회관 2층				
고문 및 자문위원	고문	이형철	010-5432-3491	hcri@knu.ac.kr	2020.03~
	자문위원	이기홍	010-8790-0725	yikihong@kangwon.ac.kr	
	자문위원	권오현	010-8590-4950	oh-Kwon@hanmail.net	
	자문위원	이근배	010-3617-3916	kbleeos@jnu.ac.kr	
정책위원	정책위원장	송기춘	010-9881-5466	kcsong@jbnu.ac.kr	
	정책위원	신원철	010-4736-6039	wcshin@pusan.ac.kr	
	정책위원	박노진	010-7736-4337	njpark@kumoh.ac.kr	
	정책위원	최인철	010-3400-5831	incheol@knu.ac.kr	
	정책위원	임재홍	010-9214-5467	chlim1@knou.ac.kr	
	정책위원	윤수정	010-8858-0272	yunsj@kongju.ac.kr	
	정책위원	김대중	010-2689-3446	kimdj@cbu.ac.kr	
	정책위원	박병욱	010-9245-3820	piarri@jejunu.ac.kr	
	정책위원	문병효	010-3455-5831	bhmoon1@kangwon.ac.kr	
	정책위원	신옥주	010-2307-1177	lahnmr@jbnu.ac.kr	
	정책위원	한상욱	010-9539-7775	shan@jbnu.ac.kr	
	정책위원	남중웅	010-4533-0189	jwnam@ut.ac.kr	
	정책위원	이선애	010-7471-3433	sunaelee@gnu.ac.kr	
	정책위원	김재수	010-7370-6706	jskim@seoultech.ac.kr	
	정책위원	유정호	010-3643-3466	jhryu@ut.ac.kr	

3. 오시는 길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 호텔 안내

· 강원 춘천시 중앙로 193 더잭슨나인스호텔 ☎ 033-815-0001

· 홈페이지 www.jacksonhotel.co.kr

※ 식당 안내

· 10/23(금) 만찬: 강원 춘천시 우묵길74번길 14 쟈스민 ☎ 033-241-5453

· 10/24(토) 오찬: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652 큰지붕닭갈비 ☎ 033-256-9292

MEMO

MEMO